



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I.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1. 정책(단위) 사업명의 명명

■ 질 의 ■

- 정책사업명(단위사업명)은 어떻게 명명하는지

■ 회 신 ■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명칭을 부여함
- 특히, 정책과 목표는 수단과 목적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정책사업은 수단 부분만을 반영하되,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함
- 단위사업 명칭은 정책사업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그 명칭만으로도 사업내용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함

(예시) ○○○도

잘못된 사례	잘 된 사례	비 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명에 목적과 수단이 모두 포함되어서는 안됨
하수시설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	하수시설 정비	

2. 시·도 산하기관의 사업구조화

■ 질 의 ■

- 시·도의 경우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의 사업은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지

■ 회 신 ■

- 시도, 시군구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사업을 구조화 할 수 있음
- 첫째, 자체사무의 경우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자체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집행 및 성과관리의 대상으로 하며 민원업무 등 지원업무 성격의 사업인 경우에도 정책 또는 단위사업으로 구조화 함
- 둘째, 본청 업무의 전체를 위임할 경우 본청은 사업구조화를 하지 않고, 위임받는 기관에서 사업구조화를 하여야 하고, 본청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예 : 도로개설사업 중 토지매입업무만 읍면동으로 위임), 기능이 상이함으로 인한 통계오류 등이 우려되므로, 원칙적으로 일부위임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본청에 예산을 편성하여 수임기관에 재배정하는 형식을 권고함. 이 경우에는 본청이 사업을 구조화하고, 재배정 받는 부서에서는 사업구조화를 할 필요는 없음
- 단, 본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에 실제 사업수행자인 사업소를 명시함

3. 자치단체별로 사업구조화가 서로 다를 경우

■ 질 의 ■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구조화가 서로 틀릴 수 도 있을 텐데요

■ 회 신 ■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 범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조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명칭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기능 중 공통적인 사무(예 : 총무, 민원, 기획, 사회복지, 환경 등)의 경우 정책사업 또는 단위사업의 구조화 시 명칭 등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것임

4. 인력운영비의 사업구조화

■ 질 의 ■

- 인력운영비의 사업구조화 방법 및 범위

■ 회 신 ■

- 사업예산제도 하에서 사업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자원(직접비, 간접비)을 사업에 합리적으로 귀속 또는 배분하고 이를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로서 우선은 행정운영경비를 정책사업 수준으로 별도 설정하고, 행정운영경비 하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단위사업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 이 경우 특정부서가 일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해당 특정부서가 1개의 단위 사업을 설정하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을 설정함
- 당초 인력운영비의 범위는 목별 분류상 인건비만을 의미하였으나, 2007년 실시된 총액인건비제도의 총액인건비 항목에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목그룹의 일부와 편성목(통계목)도 인력운영비에 포함됨

5. 재무활동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

■ 질 의 ■

- 재무활동을 정책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 회 신 ■

- 재무활동은 특정 정책, 단위사업 수행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회계 간, 자치단체 간 단순한 자금이전에 불과한 성격의 경비로서 사업별로 원가를 배분하기 어려운 경비임
- 따라서 자치단체의 특정 정책목적 수행과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상 사업별(정책, 단위사업)로 배분하지 않고 정책사업 수준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것임

II. 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 방식

■ 질 의 ■

- 예산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융자심사-예산편성지침마련-예산편성-의회의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음
 -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 및 의회의결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는지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나머지 예산과정이 진행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 중기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개최한 것처럼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 회 신 ■

-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행안부 제출 방법

■ 질 의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드시 e-호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립해야 하는지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후 의회보고하고 행안부에 제출할 때 제출방법

■ 회 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예산편성이전 사전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사업구조화를 활용하여 수립하는 것이 정확성이 있다고 보며
- 기존처럼 수기로 수립한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님
- 자치단체별로 확정된 계획의 행안부 제출방법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제출하면 됨

Ⅲ. 예산의 편성

1. 시상금의 집행에 있어 예산반영 여부

■ 질 의 ■

-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발표회에서 입상한 자치단체에 대해 현금으로 시상하는 포상금이나, 언론사와 단체,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상에 자치단체 명의로 응모·입상하여 시상식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포)상금은 자치단체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으로 편성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회 신 ■

- 확일적 답변은 어려움이 있지만 원론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리면
 - 시상금이 공무원 개인에게 전속되는 경우라면, 그 집행권도 해당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시상금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미 시상금 자체가 공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상금의 집행방법도 세출예산의 편성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세출예산 이월 후 보조금 교부시 세입반영 방법

Ⅰ 질 의 Ⅰ

- 전년도에 도비보조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미교부된 상태로 세입결산이 마무리된 반면,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될 것으로 믿고 계속 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위 경우 전년도 보조금을 금년도에 교부 받았을 경우 세입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도비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자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하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징수 결정한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세입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당해과목에 수입조치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편성 조치가 필요치 않음
- 만약, 추경 등 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조치하는 경우 이월액으로 처리할 수 없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4조)

3. 동의없이 일부항목을 증액 의결한 예산에 대한 무효범위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일부항목을 증액 의결한 예산은 예산안 전체가 효력이 없는 것인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쳐야 함
- 따라서 지방의회가 일부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예산안 전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증액 의결된 부분만 무효가 되는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안 전체에 대해 건의 의결안건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심의·의결 결과 일부 항목의 예산 증액이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항목의 예산을 증액한 “예산안 전체”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능여부

Ⅰ 질 의 Ⅰ

-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적립기금 운영목적 및 운영에 부합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 가능한 지

Ⅰ 회 신 Ⅰ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및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 내용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 다만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당해 특별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에서 정한 주차요금 수입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한 하여는 전출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세출예산의 재배정

Ⅰ 질 의 Ⅰ

- ○○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에 의거 예산배정 받은 특별회계(경리관: 사업소장, 제1관서)의 사업예산을 본청 과장(분임경리관)에게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배정은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안에 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원칙적으로 본청에서 사업소로의 위임(재배정)은 가능하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의 위임(재배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6. 성립전 예산의 긴급한 사유 필요성

Ⅰ 질 의 Ⅰ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긴급사유 또는 예산승인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난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노인회관 건립 및 목욕탕 건축비 등 긴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운용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 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7. 최종 추경예산성립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Ⅰ 질 의 Ⅰ

- 최종 추경예산승인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은

Ⅰ 회 신 Ⅰ

- 성립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시도가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 및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경우란 자금이 교부된 경우로 재원부담 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기준이 상이하여 지방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계처리상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지방예산의 통일성과 당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 이러한 처리기준으로 최종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되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하고,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여 함.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 재정정책팀-454('05.4.21)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참조

I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안의 의미

■ 질 의 ■

-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한 경우 인건비 목내 세목(기본급,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예산에서 변경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 내용에 저촉되는지

■ 회 신 ■

-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지급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예산의 범위안”이란 반드시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서상의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전용·예산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한 경우 인건비 목내 다른 세목의 변경 등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 공중보건의에 대한 자녀보육비 지원

■ 질 의 ■

- 시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기간제 직원들까지 자녀보육비를 월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도 지원이 가능한지

■ 회 신 ■

-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수당)는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음
- 따라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자녀보육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영구숙영시설의 집기 구입

■ 질 의 ■

- 도시에서 2002. 5.16~5.27(12일간)에 개최되는 세계대회를 위하여 자동차전용 캠프장(관광진흥법: 자동차야영장업 사업등록)을 조성하여 대회이후 일반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자동차 전용캠프장 영구 숙영시설(캐빈하우스 20동, 아메리칸 코테지 15동)에 필요한 집기(침구류: 27,000천원, 주방용품: 17,000천원)를 구입 지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 또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어느 과목으로 해야 하는 지

■ 회 신 ■

- 물품의 취득이란 우선 자치단체가 행정활동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 관리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예산과목에서는 물품의 범위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용도의 물품 구입시 예산의 과목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 특히 물품의 구입은 그 소유 관리권이 이를 취득한 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활용하지 않고 또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 활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취득한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예산과목의 관계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으로 자산형성적이며 잔존가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자산취득비는 일반운영비의 구입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형성적 물품이나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 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 예산과목의 적용에 있어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은 이러한 원칙아래 자체적으로 판단 운영하기 바람

4. 과태료 등 부과처분액의 예산편성과목

■ 질 의 ■

-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상 착오 등으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
 -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적용하여야 할 과목은

회신

- 먼저 과태료 등의 성격 규명이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착오로 결정된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위가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이었다면 예산반영이 가능한 것이나 단체장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사항이라면 예산반영은 어려울 것임
- 동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과목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201-01)에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5. 공무원 위탁교육경비 집행

질의

- 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영어위탁교육을 2000. 2. 7 외국어학원과 체결하여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2000. 4. 1부터 운영수당으로 직원능력개발비를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위탁교육 시행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집행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2000. 4. 1 이후는 신설 시행되는 직원능력개발비로 추경예산에 편성 영어교육비를 지원
 - 을설 : 위탁교육 계약에 의거 당초 교육대상자를 1년동안 종전의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로 집행하여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회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출원인행위와 같은 회계 관련 절차에 따라 위탁교육비의 지출이 가능함
- 직원능력개발비는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강의 선택은 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교육주체가 되어 수강토록 하는 위탁교육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은 관계법령 등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계속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원능력개발비는 위탁교육과 경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

능하겠으나 예산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함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위탁교육은 직원능력개발비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6. 시설장비유지비와 시설비의 차이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말하고 시설비는 건물, 기계,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와 도장공사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라고 되어 있음
 - ①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란 구체적기준이 있는 지
 - 예를 들면 오수펌프시설 중 3개 모터 교체(250만원 소요)시 시설비로 계상해야하는지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해야 하는 지
 - ② 소규모와 대규모의 구분기준은 있는 지

■ 회 신 ■

- 현행 과목구분과 설정에서
 -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운영비(201목)에 포함되며 설정된 내용과 같이 주로 운영적 측면에서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 “시설비(401-01)”는 자본적지출(400)에 포함되는 세목으로 과목설정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자본형성적경비를 계상함
- 대규모, 소규모 구분기준은
 -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의 일은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남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시설비”로 계상하고
 - 책걸상 수리 등 소규모 수리비는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고, 사용용도에 중점을 두어 소모성 경비로 보아 “시설유지비”로 계상하도록 함
- 문의한 오수펌프시설 중 모터교체비는 오수펌프시설에서 모터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으로 자본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이용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여짐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비목에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 바람

7.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Ⅰ 질 의 Ⅰ

- ① 기능직 및 고용직도 지급대상이 되는 지
- ② 기능직 근무자중 타과에서 파견되어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도 지급대상이 되는 지

Ⅰ 회 신 Ⅰ

- 질의①에 대하여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실과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제2조 규정을 받는 자에 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기능직 및 고용직이면서 특수업무 분야(지침에서 규정하는 실과기준)에 근무하고 있다면 지급대상이 됨
- 질의②에 대하여
 - 특정업무 지급대상자는 당해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자에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해 업무의 소관부서에 적법하게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

8. 읍면동 근무수당과 대민활동비 병급지급

Ⅰ 질 의 Ⅰ

- 읍면동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의한 읍면동 근무수당(월70,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월50,000원)와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① 보건지소 근무자에게 2003~2004년도에 읍면동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민활동비를 지급한경우에 차액분 20,000원에 대하여 읍면동근무수당으로 변경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지와
- ② 2005년도 6월까지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였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 지급한 대민활동비를 읍면동 근무수당으로 변경 소급지급할 수 있는 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과년도 지출인 경우 지방재정법 제58조에 의거 경비소속연도의 각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한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①에 대하여
 - － 공무원의 보수에 속하는 읍면동근무수당의 경우 3년 이내 청구에 의한 지급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대민활동비는 과년도 예산 지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은 불가하다 할 것임
 - － 따라서, 이 두가지 경우를 볼 때 공무원의 보수에 속하는 읍면동근무수당은 3년 이내 소급지급이 가능함으로 결과적으로 차액분 20,000원에 대하여 소급지급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질의②에 대하여
 - － 2005년도 당해연도분에 대하여는 대민활동비의 경우 지출한 세출과목으로 반납하고 반납 기간 동안 읍면동 근무수당은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9.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이월집행

Ⅰ 질 의 Ⅰ

- 의회의 해외연수계획을 수행함에 있어 2006년에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여 2006년 예산을 이월하여 2007년 상반기중 전체의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하려고 함. - 의원 국외여비도 이월이 가능한 지

Ⅰ 회 신 Ⅰ

-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 전이나 후에 있어서는 집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절한 재정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 따라서, 이월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고 있음.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파업 등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경비의 성질은 외국으로부터 비품구입, 특수한 자재 부품 구입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의원 국외여비는 경비의 성질상 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음

10. 의정활동 관련 위로 또는 격려금의 집행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의회비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은 현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재해위문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자선납비 등 위로 또는 격려금 성격의 성금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지
 - ②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각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원 명의로 질문1과 같은 성금을 지출할 수 있는 지

Ⅰ 회 신 Ⅰ

- 질의①에 대하여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공적인 제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 바, 회의시 오·만찬, 다과제공, 의원 현지 출장시 필요경비 지원, 의회의장이 공적인 필요에 의하여 인정한 각종행사시의 위로금, 격려금 지급, 지방의 회의 공청회, 세미나 개최 경비 지원 등 포괄적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이므로 실제 집행여부의 판단은 이와 같은 원칙 아래서 집행주체가 판단 운영
- 질의②에 대하여
 - 의장단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써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공적인 경비로 동 활동비는 당해직무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당해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경비지출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V. 예산의 변경 관리

1. 명시이월비의 당해연도 적용기준

■ 질 의 ■

- 지방재정법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의 규정에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연도의 적용기준은

■ 회 신 ■

- 명시이월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 당해연도라는 것은 최초로 예산이 편성된 연도를 말하는 것임

2. 사고이월 가능 여부

■ 질 의 ■

-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자 총공사비 126억원중 2004년에 시설비를 30억원 계상하여 2005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음
- 본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2005년 8월 입찰공고(총공사비 126억원)하여 2005년 10월 입찰신청결과 무응차로 유찰
-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을 준용 입찰공고를 원인행위로 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 회 신 ■

-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 경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으므로 사고이월 불가

〈참고〉 - 답변 이후 개정 사항

- 2005년 10월 위 질의사항의 답변 이후 지방재정법(2005.8.4)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12.30)이 전면개정되어,
위 사례와 같이 특정공사의 턴키 방식 입찰인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즉,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5년 8월에 이루어진 입찰공고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구조화되지 않은 사업으로 전용가능 여부

Ⅰ 질 의 Ⅰ

- 예산의 전용을 할 때 당초 구조화 되지 않은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전용이 가능한지

Ⅰ 회 신 Ⅰ

- 전용이라 함은 세출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문제점인 “추계에 의한 예산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항 때문에 발생하며 운영 과정상의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써 운영은 최소화 되어야 함
- 사업예산제도하에서 세부사업이 예산편성 목적을 가진 최소의 단위이므로 당초에 존재하지 않은 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전용의 유연성을 초과한다고 보고 다만, 예산의 편성목적은 세부사업의 경비 성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없는 과목을 신설하여 전용조치를 하여도 당초 목적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함

VI. 지방예산 용어 해설



경상수입 (經常收入)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수수료·사용료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일시적인 것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익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단일예산주의 원칙 (單一豫算主義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임.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지활동이 단일한 예산서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내부거래, 중복거래 등이 없게 되며 예산활동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고 아울러 연도중 1회에 걸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조직의 유지·관리, 사회복지, 지역개발,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잡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모든 행정활동을 하나의 예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효율성과 능률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며, 또한 지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의 시책추진, 재해의 대비 및 복구 등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예기치 않은 예산집행 등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한 예산편성은 재정활동을 과도히 경직시키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령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한 자금의 운영 등 예외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담금 (負擔金)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예 : 단체위임사무, 관련위임사무)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시·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를 국가(시·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국가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금은 조세외에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한 재원을 구성하게 됨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결산시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시에 그 금액이 확정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 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